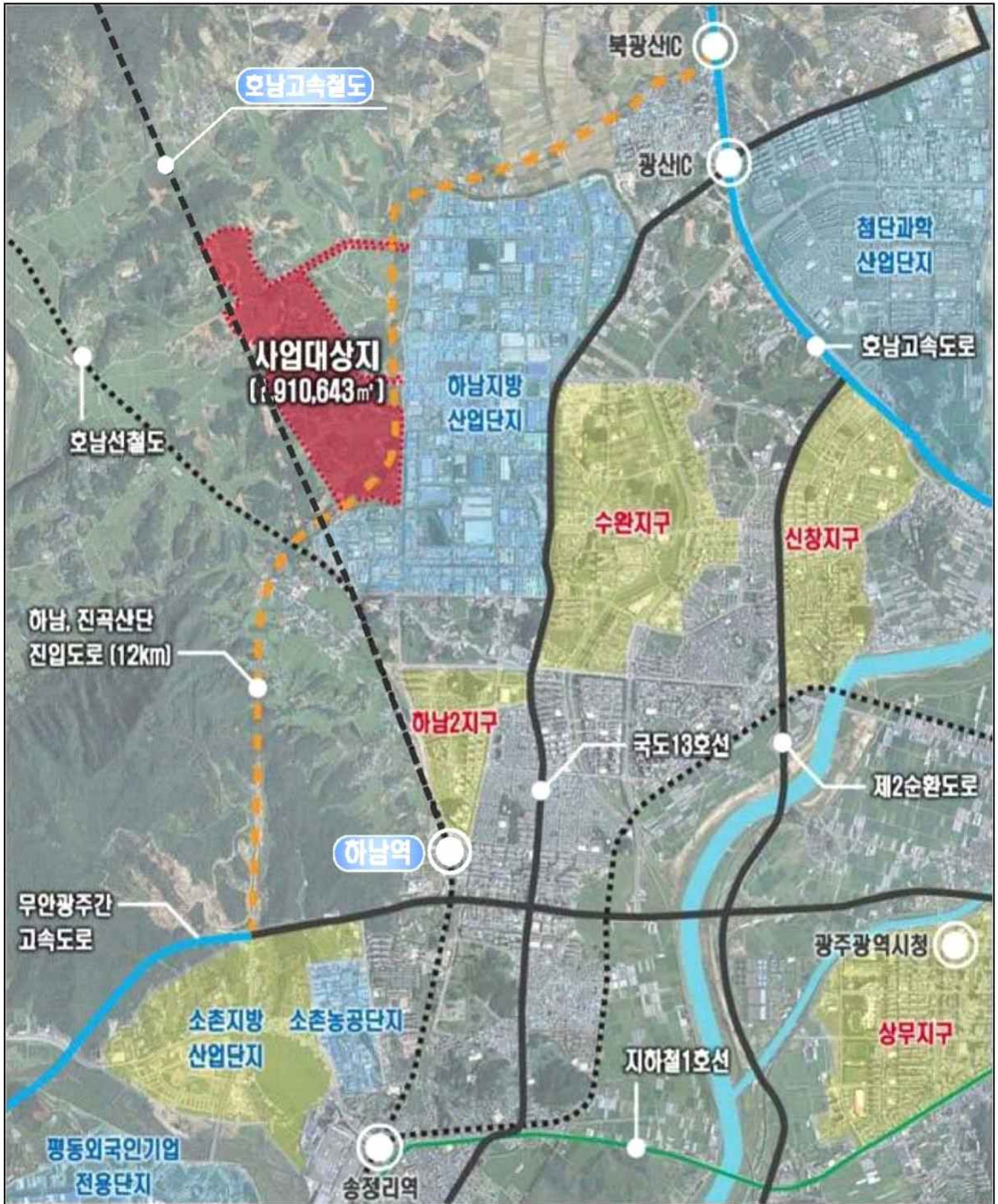


진곡일반산업단지 위치도



[감정평가 대상 토지]

- 광주 광산구 진곡동 530



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

□ 산업지원시설용지

도면번호	구 분	계 획 내 용
B1~B15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14]의 시설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) - 의료시설(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 -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-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 •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[별표13]의 시설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매시설(동물 및 식물관련시설, 분뇨 및 쓰레기 관련시설 제외) - 운동시설(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) - 업무시설(공장 및 창고시설 제외)
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• 80% 이하
	용적률	• 400% 이하
	높 이	• 최고층수 : 7층(30m) 이하
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,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•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, 안테나등 옥탑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등으로 차폐 • 조경시설면적의 30%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
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조색(70%이상) :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(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) • 보조색 : 구조색 계통의 색 권장 • 강조색(10%미만) : 제한없음 	

※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른 허용 용도 변경

□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
도면번호	계 획 내 용
대지내 차량출입	• 교통영향평가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,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담 장	•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
옥 외 광고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옥외광고물은 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’에 의거 설치토록 하고, 본 산업단지의 경우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 •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(단,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에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,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) • 간판의 크기·형태·문자·색상·도형·재질·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따르되, 건물·공작물·다른 광고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• 돌출형 간판 :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수 없음 • 연립지주형 간판 : 간판은 건축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인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

